#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운영 규정

제정일: 1999. 5. 1

개정일: 2008, 5, 1

## 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소재 중소기업의 애로기술 해결 및 신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성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지원사업(이하 "산학협력지원사업"이라 한다)에 따른 광운대학교(이하 "본교"라 한다)의 인적, 물적 기술개발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.<개정 2008. 5. 1>

제2조(재원) 산학협력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하며, 산학협력지원사업 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.<개정 2008. 5. 1>

- 1. 중소기업청의 지원의 현금 또는 현물
- 2. 서울특별시의 지원의 현금 또는 현물
- 3. 참여기업 출연의 현금 또는 현물
- 4. 본교 출연의 현금 또는 현물

제3조(관련부서의 협조) 산학협력지원사업의 총괄책임자는 사업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우 본교의 관련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, 해당부서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<개정 2008. 5. 1>

## 제 2 장 조 직

- 제4조(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) ① 산학협력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교 부속 중소기업산학 협력센터(이하 "센터"라 한다)를 둔다.
  - ② 센터에는 센터장(산학협력지원사업의 총괄책임자)과 간사를 두며, 직원과 조교를 둘 수 있다.
  - ③ 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하는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하며, 센터를 대표하고 산학협력지원사업 업무를 총괄적으로 운영한다.
  - ④ 간사는 산학협력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본교 교원 가운데서 센터장이 위촉하며, 센터장을 보좌한다.

[전문개정 2008, 5, 1]

- 제5조(운영위원회)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운영위 원회를 둔다.<개정 2008. 5. 1>
  - ② 운영위원은 센터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한다.
  - ③ 운영위원회는 센터장, 간사, 7명 이하의 산학협력지원사업 참여 교수 및 비참여 교수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. 단. 필요시 외부인사를 참여시킬 수 있다.<개정 2008. 5. 1>
  - ④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  - ⑤ 운영위원회는 과반수 출석으로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제6조(운영위원회의 기능)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개정 2008. 5. 1>
  - 1. 센터에 관한 기본정책 및 홍보에 관한 사항
  - 2. 재정의 관리 ·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

- 3. 결산 및 기타 회계에 관한 중요사항
- 4. 연구과제의 선정 및 연구진행 사항의 확인
- 5. 기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

### 제 3 장 연구과제의 선정 및 사업비 신청

- 제7조(연구개발과제) ① 연구개발과제는 참여기업별 1기업 1과제(참여기업별 연구개발과제)와 공동연구과제 다기업 1과제(공동연구개발과제)로 구분한다.
  - ② 산학협력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교수는 산학협력지원사업의 설립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도출하여, 연구개발과제의 계획서(참여기업과의 합의사항 결과 첨부)를 센터로 신청하여야 한다.<개정 2008, 5. 1>
  - ③ 과제별 연구 진행 및 기업과의 연구업무 처리는 과제별 연구책임교수가 주관한다.
  - ④ 연구개발 활동 중 발생하는 제반문제의 해결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제8조(연구개발과제의 심의) ① 센터장은 매년 산학협력지원사업 사업시작 3개월 전에 센터에 제출된 연구계획서를 운영위위원회에 상정한다. 단,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입각하여 신청자격자의 범위확대와 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<개정 2008. 5. 1>
  - ② 운영위원회에서는 본 절차의 선정기준에 입각하여 산학협력지원사업 연구과제를 심의·확정한다. 연구과제의 심의는 별도로 규정된 [별표 1]의 '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연구과제 선정평가표'에의 거하여 평가하고, 선정평가표는 연구과제를 신청하기 1개월 전에 관련 교원들에게 공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, 5. 1>
  - ③ 센터장은 최종 확정된 연구과제의 제목과 사업일정을 해당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한다.
- 제9조(연구개발과제의 확정기준) ① 연구개발과제는 매 사업마다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한다.
  - ②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별도의 '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연구과제 선정평가표'에 의거하여 확정한다.<개정 2008. 5. 1>
    - 1. 기업체 공동과제 우대
    - 2. 교내의 타 연구과제 미수행자 우대
    - 3. 서울북부 기업체 우대
    - 4. 연구계획서의 충실성
    - 5. 연구과제의 우수성
    - 6. 참여업체의 기술개발 의지
    - 7. 연구책임자의 최근 3년간 업적평가
    - 8. 산학협력지원사업 관련 우수연구자 우대
    - 9. 교수의 산학협력지원사업 참여도
    - 10. 기업의 산학협력지원사업 참여도
- 제10조(연구계획의 변경)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제목, 연구내용 및 연구진 등에 대해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할 시 연구계획 변경신청을 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.
  - ② 센터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연구계획 변경사유서를 서울특별시장 및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## 제 4 장 센터 사업비의 관리

<개정 2008. 5. 1>

- 제11조(사업비의 관리) ① 사업비는 센터에서 중앙관리를 원칙으로 한다.
  - ② 센터 사업비는 센터의 연구비관리 은행계좌로 입·출금되어야 한다.<개정 2008, 5, 1>

- 제12조(사업비의 회계 및 정산) 센터의 회계는 센터장이 관장하며,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.<개정 200 8 5 1>
  - 1. 사업비의 수입과 지출은 별도로 개설된 센터의 계정에 의하여 회계한다.
  - 2. 총괄 회계 및 정산은 센터에서 집행하며, 세부과제 회계 및 정산은 연구책임 교수 관리 하에 실시한다. 단, 회계 및 정산은 본교 연구처의 연구비 관리 규정에 따른다.
  - 3. 센터의 사업비 계정에 입금된 사업비는 연구과제별로 계정을 설정하고 해당과제 과제별 책임교수가 계정책임자가 된다.
  - 4. 과제별 책임교수는 분기별로 정산을 하여 센터에 관련서류를 비치해야 하며, 연구기간이 종료되면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센터장에게 제출하고, 이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.
  - 5. 10만원 이상의 물품은 세금계산서로 처리하며, 10만원 미만의 물품은 간이 세금계산서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.
  - 6. 과제별 사업비 사용 및 정산에 대한 책임은 과제별 책임교수가 진다.
- 제13조(사업비의 지급) ① 사업비의 지급은 연구계획서상의 연구진척 사항에 따라 4분기 분할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  -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계정 설정 후 실행예산 범위 내에서 지난 분기 사업비의 정산과 다음 분기의 사업비 신청을 하여야 한다. 지난 분기 사업비의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다음 분기의 사업비 지급에 제한을 줄 수 있다.
  - ③ 연구책임자는 연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연구비 실행예산 총액의 25% 범위 내에서 선급금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다.
- 제14조(연구장비의 구매 및 관리) ① 연구기기 및 장비의 구입은 본교의 물품구매 절차에 따라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다음 각 호에 한하여 연구책임자가 직접 구입할 수 있다.
  - 1. 연구기기 및 장비의 가격이 소액인 경우
  - 2. 연구수행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
  - 3. 현지구매 등 기타 그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
  - 단,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기 및 장비구입 영수증을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.
  - ② 사업비에 의하여 구입한 연구기기 및 장비는 연구지원 기관과의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연구가 종료된 후에는 본교의 재산으로 귀속 조치된다.
  - ③ 귀속관리 대상물품의 품목, 규격, 수량, 단가 등을 기재한 물품목록을 작성하여 연구책임자와 센터장의 확인을 거친 후 관리처에 관리 전환토록 한다.
- 제15조(소액전도자금의 운영) 연구과제 및 센터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긴급을 요하는 재료의 현금구매 및 제비용의 지출에 사용하기 위한 소액전도자금을 마련하고 센터에서는 다음 사항에 의거하여 관리하도록 한다.<개정 2008, 5. 1>
  - 1. 센터의 소액전도자금의 규모는 100만원 내외로 하며, 소액전도자금의 운영관리책임자는 센터장이 되며 자금의 출납 및 보관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.
  - 2. 센터장은 소액전도자금 출납장을 비치 기록 유지하여야 하고 항상 장부잔액과 현금이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.
  - 3. 소액전도자금의 사용자는 센터장의 승인하에 자금을 사용할 수 있으며, 5일 이내에 관련 영수증을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.

#### 제 5 장 보고 및 평가

- 제16조(중간 및 최종 보고서의 제출) ① 과제책임자는 연구기간 중 센터에서 지정하는 시기에 연구진행의 중간과정에 대한 중간보고서를 별지 양식에 따라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 - ② 과제책임자는 연구기간 종료 시까지 최종보고서를 별지양식에 따라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

하며, 최종보고서에 소정의 사업비 사용내역서와 관련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.

③ 과제책임자는 중간 및 최종보고서와는 별도로 연구결과 요약서 및 본 센터의 연구결과 홍보를 위한 자료 등을 센터장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7조(연구개발의 자체평가) ① 운영위원회는 연구개발 결과에 대한 자체평가를 주관한다.

- ② 과제책임자는 연구개발기간 종료 시까지 연구개발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연구개발 내역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  - 1. 총괄요약
  - 2. 연구개발 요약
  - 3. 시제품, 상품견본,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서 사본, 논문계재 예정 증명서 등
  - 4. 참여기업체의 의견서
  - 5. 기타 연구개발 업적을 증명할 만한 물품
- ④ 연구개발결과 자체평가는 다음의 기준으로 평점을 산출한다.

평 가 항 목	평 점	비고
산업재산권(특허 및 실용신안)	100점	
개발목표 달성도	100점	
논문발표(교내외 학술지 게재논문, 학술회의 발표, 저서, 기타)	100점	
참여기업 의견서(연구결과 만족도)	150점	공동연구개발 과제는 참여기업수로 평균
연구진행 사항에 대한 자체평가	150점	자체평가기준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
계	600점	

제18조(위크숍 및 세미나) 산학협력지원사업에 관한 워크숍 및 세미나 등은 연간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, 그 시기 및 방법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.<개정 2008. 5. 1>

#### 제 6 장 과제책임자의 의무

제19조(과제책임자의 의무) 과제책임자는 성공적 연구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한 책임을 진다.

- 1. 과제별 연구진행 및 해당기업과의 업무처리는 세부과제 책임자가 주관한다.
- 2. 세부과제 진행 중 연구활동 또는 연구비 집행에 관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세부과제 책임자가 해결하여야 하며, 이와 관련하여 센터 및 관계기관의 지적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.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과제 신청 시 제외시킬 수 있다.
- 3. 수시로 관련 기업체를 방문하여 기업체 대표 또는 관련 기술자에 대해 기술지도를 하고 연구 진행에 대한 협의를 별지양식에 의거하여 방문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.
- 4. 본 센터에서 주최하는 기술협력 센터 운영에 필요한 각종 회의 및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, 이 결과를 자체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.

제20조(구상권의 행사) 과제책임자의 중대한 과실 또는 태만으로 인하여 산학협력지원사업의 수행에 문제가 발생하여 자금소요가 생기는 경우에는 센터장은 과제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. <개정 2008. 5. 1>

# 제 7 장 보 칙

제21조(참고사항) 본 기술협력 센터의 운영규정은 중소기업청 및 서울특별시의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용요령 및 세부지침'에 따르며, 기타 센터 운영 시 발생하는 문제는 운영위원회에서 심 의하여 해결한다.<개정 2008. 5. 1>

부 칙

이 규정은 199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